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6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대상 과제에 해당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분할된 산업단지시설용지의 위치 및 획지의 형상을 감안하여 분양가격을 차별화함으로써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분양을 촉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 조성원가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을 촉진하고자 함.(안 제16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0조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개선사항 없음
라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2016. 9. 30. ~ 10. 26.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의 조성원가로 한다. 다만,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분양가격의 결정) 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의 조성원가로 한다.	제16조(분양가격의 결정) 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의 조성원가로 한다. 다만,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6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 ○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비용부담 납입을 위해서 제정당시 부적합한 가산금 조항을 상위법 조항과 일치되도록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 ○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100의5에서 100의3으로 개정(안 제31조제1항)

3. 참고사항
 가. 관련법령 :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1조
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 다.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개선사항 없음
 라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2016. 10. 17. ~ 11. 7.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5에”를 “3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가산금 및 중가산금)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.	제31조(가산금 및 중가산금) ① 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3에 ----------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